

홍콩	수출현안/ 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(2015년 5월28일) / 홍콩 aT센터

구분	핵심 내용
(*라벨링)	<input type="checkbox"/> “ 한국산 빙과류(롯데) 포함 색소 라벨상 미표기 ”

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
주요 내용

- 홍콩 식품 안전청에서는 5월 27일 한국산 빙과류의 마켓 출하 전 진행된 사전포장 검사에서 제품 내 사용된 색소에 대하여 라벨상 표기가 안 되어 있음을 적발함
- 동 건은 시장 유통 전 단계에서 발견되었으며 판매 보류 및 관련 업계와 당국에 해당 내용 통지
- 만약 시판 전 라벨링 과정에서 전성분에 대한 표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, 『식품 및 약물 규정 제 132W장』에 의해 최고 HK\$5만(한화 약 6백만)까지의 벌금 및 징역 6개월 구형.



제품명	Joomuler Green Grape (주물러 청포도)
불합격사항	제품 내 포함된 색소(tartrazine and Brilliant Blue FCF) 라벨상 미표기
근거 법규	『식품 및 약물』 규정 상 라벨링시 전 성분 표기 필수
브랜드명	롯데
수입업체명	Gainly Enterprise Limited
처리 방식	제품 판매 보류 및 벌금형 (홍콩불 5천 미만 예상)
발표 일자	2015. 05. 27

○ 참고사이트 : http://www.cfs.gov.hk/english/press/20150527_0267.html

시사점 / 대처 방향

- 빙과류에 자주 사용되는 색소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 파악 및 제품 함유 성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 라벨링 작업하여 추후 동일 문제 발생 예방.

발표 일자/ 출처 : 2015. 5. 27 홍콩 식품안전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됨